

평생교육원 운영 규정

제정 1997. 01. 08.

제12차 개정 2019. 08. 2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교육원은 상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지역주민의 교양과 직업적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3조(위치) 교육원은 상지대학교 캠퍼스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성인교육의 실시 및 공개강좌의 개설
2. 봉사교육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
3.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수집·개발 및 보급
4. 연구지의 발간
5.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교육·훈련·연수사업(외부 연구비 지원사업 제외)
6.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5조(행정의 지원) 우리 대학 재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교육·훈련·연수 사업의 행정을 지원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장 조직

제6조(원장)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, 필요에 따라 부원장을 둘 수 있다.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, **조교수**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8.21.)

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7조(교직원) 교육원에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구성) ①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
4. 수강인원 및 학습비·강사료에 관한 사항
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6.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7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0조(의결사항)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1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4장 교육과정

제12조(교육과정) 교육원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봉사 교육과정
2. 전문(자격증) 교육과정
3. 교양 교육과정
4. 교내·외 위탁 연계 교육과정
5. 기타 교육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

[조명변경 2019.05.27] 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3조(학점은행제) 교육원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
[본조신설 2019.05.27]

제14조(모집 및 수업기간) 모집 및 수업기간은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5조(수업) 교육원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[조명변경 2019.05.27] 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6조(지원자격)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성인으로 하며 기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특수한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·연령

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7조(선발방법)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걸쳐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8조(설치과정) ①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(정원)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제17조의 학습비는 원장이 따로 정하되 그 내용은 매학기 모집요강에 공고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19조(강사료) ① 정규과정의 강사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단,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.

② 정규과정 이외 교육과정의 강사료 및 강의관련 제반비용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0조(학습비) ①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폐강, 과오납 등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등을 준용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1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교육원의 수료자는 각 과정별 소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전문과정 등 자격증 발부와 관련되는 과정은 80%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2조(공개강좌) ① 교육원에는 별도의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3조(평가주기/활용) 평생교육원 만족도 조사 평가는 교육만족도 조사규정 제4조(조사시기)에 의하여 실시한다.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

제24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5조(학생활동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강을 불허할 수 있다.

1.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이나 기타 불온한 목적을 위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

- 2.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
 - 3. 수강생으로서의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- 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6조(포상)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6장 회계

제27조(회계년도)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상지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8조(예산편성 및 사업계획) ①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29조(결산 및 사업보고) 원장은 교육원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전부개정 2019.05.27]

제30조(수입원)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 수강생의 수강료
- 2. 우리 대학의 보조금
- 3.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보조금
- 4. 사회 유지의 찬조금
- 5. 기타 수입

[전부개정 2019.05.27]

부칙

이 원칙은 1997년 1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원칙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원칙은 199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원칙은 19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원칙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원칙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44, 2010.3.11)

이 원칙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56, 2010.4.23)

이 원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18, 2016.6.21)

이 원칙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73, 2017.6.23)

이 원칙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4, 2019.05.14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74, 2019.05.27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28, 2019.08.21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